

충청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영학

충청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이상욱 의원 등 12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년 11월 29일

○ 회부일자 : 2019년 11월 29일

3. 제안이유

-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시행에 따라 충청북도의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인 충북도민의 언어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충청북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도민 대상 한국수어교육 지원(안 제5조)
-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고용안정 노력(안 제7조)

- 도내 비영리 법인·기관·단체의 관련 사업지원(안 제8조)
- 한국수어 보급과 발전, 농인의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한 포상 (안 제10조)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시행에 따라 충청북도의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인(聾人) 및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인 충북도민의 언어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2조에서는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제5조에서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국수어교육 지원과 농인에게 한국수어교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음.
 -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수어통역 지원, 수어전문인력 양성을,
 - 제9조에서는 농인 등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수어 편의시설 제공 및 설치의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음.
- 전국 지자체 중 69개 지자체에서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이나 수어통역센터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있음.(2019. 12월 현재)

- 이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각 조항에 대한 이견이 없음.
- 광역시도에서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를 살펴보면 장애인 담당부서와 문화 담당부서로 나누어져 있음. 수화가 청각, 언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한국수화언어법」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한 이유는, 한국수화를 장애인만의 필요언어 개념이 아니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인정하는 관점에 따른 것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취지에 맞게 우리 도에서도 문화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충북수어통역센터 운영과 장애인 복지 장애인 담당부서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조례가 되지 않도록 수화언어 확산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붙임: 충청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조례안 1부.